

고 시

1. 안양시 고시 제2015-149호(2015. 12. 11.)호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2번지 일원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8045-256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가.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도면 : 따로 붙임(게재생략). 끝.

2024. 9. 27.

안 양 시 장

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—	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안구 관양동 1742번지 일원	255,064.8	—	255,064.8	안고제31호 (2012.4.3.)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—	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지구단위계획구역	- 지번변경 - 관양동 785번지 일원 → 관양동 1742번지 일원	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·시행 반영

② 용도지역·용도자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용도지역		면 적(㎡)	구성비 (%)	비고
공업 지역	계	255,064.8	100.0	
	준공업지역	76,372.0	30.0	
	일반공업지역	178,692.8	70.0	

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(변경)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종별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광로	3	4	40~43	주간선 도로	2,697 (217)	광장9 (범계동1144)	광로2-2 (관양동224-10)	일반 도로	시민 대로	건고제836호 (89.12.30)	
변경	광로	3	4	40~43 (3~4)	주간선 도로	2,697 (217)	광장9 (범계동1144)	광로2-2 (평촌동82-1)	일반 도로	시민 대로	건고제836호 (89.12.30)	
기정	대로	3	16	25	주간선 도로	1,495 (41)	광로3-3 (관양동1610)	광로3-4 (관양동1622)	일반 도로	학의로	건고제836호 (89.12.30)	
기정	대로	3	46	25.5~27	보조간선 도로	639 (639)	광로3-4 (관양동1044)	중로2-97 (관양동1756)	일반 도로	—	안고제95호 (12.09.04)	
변경	대로	3	46	25.5~27	보조간선 도로	639 (639)	광로3-4 (관양동1618)	중로2-97 (관양동1803)	일반 도로	—	안고제95호 (12.09.04)	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종별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97	15~18	보조간선 도로	537 (441)	대로3-16 (관양2동1646)	중로3-7 (관양동1307-103)	일반 도로	학의로	안고제95호 (12.09.04)	
변경	중로	2	97	15~18	보조간선 도로	537 (441)	대로3-16 (관양동1622)	중로3-7 (관양동1307-103)	일반 도로	학의로	안고제95호 (12.09.04)	
기정	중로	2	98	18	집산도로	424 (399)	대로3-16 (관양2동1646)	중로3-100 (관양동1748)	일반 도로	—	안고제95호 (12.09.04)	
변경	중로	2	98	18	집산도로	424 (399)	대로3-16 (관양동1622)	중로3-100 (관양동1748)	일반 도로	—	안고제95호 (12.09.04)	
기정	중로	2	99	15	국지도로	250 (250)	중로2-98 (관양동1752)	중로2-101 (관양동1754)	일반 도로		안고제95호 (12.09.04)	
기정	중로	2	100	15	국지도로	496 (496)	대로3-46 (관양동782)	중로2-101 (관양동1750)	일반 도로	—	안고제95호 (12.09.04)	
변경	중로	2	100	15	국지도로	496 (496)	대로3-46 (관양동1804)	중로2-101 (관양동1750)	일반 도로	—	안고제95호 (12.09.04)	
기정	중로	2	101	15	국지도로	366 (324)	중로1-87 (관양동869-3)	중로2-99 (관양동1753)	일반 도로	—	안고제95호 (12.09.04)	
변경	중로	2	101	15	국지도로	366 (324)	중로1-87 (관양동855-4)	중로2-99 (관양동1753)	일반 도로	—	안고제95호 (12.09.04)	
기정	중로	3	100	12	국지도로	174	중로1-87 (관양동855-4)	중로2-98 (관양동1752)	일반 도로	—	안고제95호 (12.09.04)	
변경	중로	3	100	12	국지도로	174 (—)	중로1-87 (관양동855-4)	중로2-98 (관양동1748)	일반 도로	—	안고제95호 (12.09.04)	

※ ()는 구역 내 연장 및 폭원임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광로3-4	광로3-4	◦지번 변경 — 종점: 관양동 224-10 → 평촌동 82-1	◦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·시행 반영
대로3-46	대로3-46	◦지번 변경 — 시점: 관양동 1044 → 관양동 1618 — 종점: 관양동 1756 → 관양동 1803	
중로2-97	중로2-97	◦지번 변경 — 시점: 관양2동 1646 → 관양동 1622	
중로2-98	중로2-98	◦지번 변경 — 시점: 관양2동 1646 → 관양동 1622	
중로2-100	중로2-100	◦지번 변경 — 시점: 관양동 782 → 관양동 1804	
중로2-101	중로2-101	◦지번 변경 — 시점: 관양동 869-3 → 관양동 855-4	
중로3-100	중로3-100	◦지번 변경 — 종점: 관양동 1752 → 관양동 1748	

2) 주차장(변경없음)

■ 주차장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84	노외주차장	관양동 1741 일원	5,379.4	안고제95호 (12.09.04)	

나. 공간시설

1) 공원(변경없음)

■ 공원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공 원 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7	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	체육공원	관양동 1741번지 일원	10,051.7	안고제95호 (12.09.04)	

2) 녹지(변경)

■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변경	6	녹지	연결녹지	관양동 1805번지	1,164.6	안고제95호 (12.09.04)	
변경	7	녹지	연결녹지	관양동 1806번지	3,817.2	안고제95호 (12.09.04)	
변경	8	녹지	연결녹지	관양동 1807번지	902.4 (651.1)	안고제95호 (12.09.04)	
기정	9	녹지	연결녹지	관양동 1737번지	630.5	안고제95호 (12.09.04)	
기정	10	녹지	연결녹지	관양동 1738번지	625.9	안고제95호 (12.09.04)	

※ ()는 구역 내 면적임

■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6	연결녹지	◦지번 변경 - 관양동 1758번지 → 관양동 1805번지	◦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·시행 반영
7	연결녹지	◦지번 변경 - 관양동 1759번지 → 관양동 1806번지	
8	연결녹지	◦지번 변경 - 관양동 1760번지 일원 → 관양동 1807번지	

3) 공공공지(변경없음)

■ 공공공지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공 원 명	위 치	면 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50	공공공지	관양동 1755번지	1,060.5	안고제95호 (12.09.04)	

④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1) 주거용지(공동주택)(변경)

■ 주거용지(공동주택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<기정>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위 치	면 적(㎡)	
A1	63,070.2	관양동 766-2번지 일원	63,070.2	

<변경>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위 치	면 적(㎡)	
A1	63,070.2	관양동 1815번지	63,070.2	

■ 주거용지(공동주택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	변경후	변경내용	변경사유
A1	A1	·지번 변경 - 관양동 766-2번지 일원 → 관양동 1815번지	·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·시행 반영

2) 산업시설용지(변경)

<기정>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가구 번호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	소계	110,858.9		110,858.9	
1	I1	24,015.3	관양동 1735번지	4,333.1	·인접한 3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
2			관양동 1735-1번지	3,967.0	
3			관양동 1735-2번지	4,198.8	
4			관양동 1735-3번지	3,924.2	
5			관양동 1735-4번지	2,503.3	
6			관양동 1735-5번지	2,376.2	
7			관양동 1735-6번지	2,712.7	
1	I2	10,142.3	관양동 1736번지	1,690.2	·인접한 3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
2			관양동 1736-1번지	1,690.8	
3			관양동 1736-2번지	3,381.3	
4			관양동 1736-3번지	3,380.0	
1	I3	15,712.3	관양동 1739번지	2,316.7	·인접한 3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
2			관양동 1739-1번지	1,973.4	
3			관양동 1739-2번지	1,981.4	
4			관양동 1739-3번지	1,981.3	
5			관양동 1739-4번지	1,982.1	
6			관양동 1739-5번지	1,981.6	
7			관양동 1739-6번지	3,495.8	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가구 번호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1	I4	17,487.7	관양동 1740번지	1,915.2	·인접한 3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
2			관양동 1740-1번지	1,914.4	
3			관양동 1740-2번지	2,497.6	
4			관양동 1740-3번지	2,496.8	
5			관양동 1740-4번지	2,497.2	
6			관양동 1740-5번지	2,854.1	
7			관양동 1740-6번지	3,312.4	
1	I5	30,000.0	관양동 1743번지	4,319.8	·인접한 3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 (단, 승인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8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)
2			관양동 1743-7번지	4,320.3	
3			관양동 1743-1번지	4,320.3	
4			관양동 1743-6번지	4,320.6	
5			관양동 1743-2번지	3,702.5	
6			관양동 1743-5번지	3,602.1	
7			관양동 1743-3번지	2,744.2	
8			관양동 1743-4번지	2,670.2	
1	I6	13,501.3	관양동 1744번지	3,382.2	·인접한 3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
2			관양동 1744-1번지	3,381.4	
3			관양동 1744-2번지	3,380.8	
4			관양동 1744-3번지	3,356.9	

<변경>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가구 번호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	소계	110,858.9		110,858.9	
1	I1	24,015.3	관양동 1735번지	4,333.1	·인접한 3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
2			관양동 1735-1번지	3,967.0	
3			관양동 1735-2번지	4,198.8	
4			관양동 1735-3번지	3,924.2	
5			관양동 1735-4번지	2,503.3	
6			관양동 1735-5번지	2,376.2	
7			관양동 1735-6번지	2,712.7	
1	I2	10,142.3	관양동 1736번지	1,690.2	·인접한 3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
2			관양동 1736-1번지	1,690.8	
3			관양동 1736-2번지	3,381.3	
4			관양동 1736-3번지	3,380.0	
1	I3	15,712.3	관양동 1739번지	2,316.7	·인접한 3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
2			관양동 1739-1번지	1,973.4	
3			관양동 1739-2번지	1,981.4	
4			관양동 1739-3번지	1,981.3	
5			관양동 1739-4번지	1,982.1	
6			관양동 1739-5번지	1,981.6	
7			관양동 1739-6번지	3,495.8	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가구 번호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1	I4	17,487.7	관양동 1740번지	1,915.2	·인접한 3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
2			관양동 1740-1번지	1,914.4	
3			관양동 1740-2번지	2,497.6	
4			관양동 1740-3번지	2,496.8	
5			관양동 1740-4번지	2,497.2	
6			관양동 1740-5번지	2,854.1	
7			관양동 1740-5번지	3,312.4	
1	I5	30,000.0	관양동 1743번지	4,319.8	·인접한 3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 (단, 승인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8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)
2			관양동 1743-7번지	4,320.3	
3			관양동 1743-1번지	4,320.3	
4			관양동 1743-6번지	4,320.6	
5			관양동 1743-2번지	3,702.5	
6			관양동 1743-5번지	3,602.1	
7			관양동 1743-3번지	2,744.2	
8			관양동 1743-4번지	2,670.2	
1	I6	13,501.3	관양동 1745번지	3,382.2	·인접한 3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
2			관양동 1745-1번지	3,381.4	
3			관양동 1745-2번지	3,380.8	
4			관양동 1745-3번지	3,356.9	

■ 산업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	변경후	변경내용	변경사유
I4	I4	◦지번 변경	◦토지대장 현행화 반영
I6	I6	◦지번 변경	◦오기사항 정정 반영

3) 지원시설용지(변경)

<기정>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가구 번호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1	S1	15,344.1	관양동 1746번지	3,139.8	·인접한 2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
2			관양동 1746-1번지	3,140.7	
3			관양동 1746-2번지	3,815.0	
4			관양동 1746-3번지	3,468.1	
5			관양동 1746-4번지	1,780.5	

<변경>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가구 번호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1	S1	15,344.1	관양동 1746번지	3,139.8	·인접한 2 획지 이내 공동개발 허용
2			관양동 1746번지	3,140.7	
3			관양동 1746-2번지	3,815.0	
4			관양동 1746-3번지	3,468.1	
5			관양동 1746-4번지	1,780.5	

■ 지원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	변경후	변경내용	변경사유
S1	S1	·지번 변경	·토지대장 현행화 반영

4) 공공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위 치	면 적(㎡)	
P1	3,306.2	관양동 1744번지	3,306.2	—

⑤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
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1) 주거용지(공동주택)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계 획 내 용
1	A1	허용용도	·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관련 별표1 제2호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 ·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
		불허용도	·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30%이하
		용적률	·250%이하
		높 이	—
		형 태	·양호한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주동의 길이는 4호 이하 또는 50m 이하로 계획 ·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
		색 채	·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, 보조색, 강조색, 지붕 색으로 구분하고 『시행지침 제Ⅲ편 제4장 색채』 참조
		건축선	·건축한계선 5m

2) 산업시설용지(변경)

<기정>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계 획 내 용
1	I	I1 ~ I4, I6	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에 의한 공장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)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 중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5의 첨단업종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지식산업 관련시설)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※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미만으로 개별처리하는 공장 및 연구소에 한함 ◦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및 그 이외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 종업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에 한함) ◦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(구내매점), 휴게음식점 (커피숍)(1층에는 불허하며 각 용도별 바닥면적은 300㎡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함)
		허용 용도	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에 의한 공장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)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 중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5의 첨단업종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지식산업 관련시설)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※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미만으로 개별처리하는 공장 및 연구소에 한함 ◦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24호에 의한 방송통신시설(해당 유치업종(J62)과 관련된 지원·연관업종에 한함)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및 그 이외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 종업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에 한함) ◦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(구내매점), 휴게음식점 (커피숍)(1층에는 불허하며 각 용도별 바닥면적은 300㎡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함)
		불허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◦70%이하
		용적률	◦300%이하(단,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부 제4장 제7절 7-1-3B에 의한 친환경·에너지절감형 건축물 도입시 추가 용적률 적용가능)
		높이	◦48m(10층)이하
		색채	◦『시행지침 제Ⅲ편 제4장 색채』 참조
		건축선	◦건축한계선 2m

<변경>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계 획 내 용
1	I	I1 ~ I4, I6	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에 의한 공장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)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 중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5의 첨단업종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지식산업 관련시설)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※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미만으로 개별처리하는 공장 및 연구소에 한함 ◦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및 그 이외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 종업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에 한함) ◦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(구내매점), 휴게음식점 (커피숍)(1층에는 불허하며 각 용도별 바닥면적은 300㎡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함)
		허용 용도	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에 의한 공장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)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 중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5의 첨단업종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지식산업 관련시설)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※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미만으로 개별처리하는 공장 및 연구소에 한함 ◦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24호에 의한 방송통신시설(해당 유치업종(J62)과 관련된 지원·연관업종에 한함)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및 그 이외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 종업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에 한함) ◦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(구내매점), 휴게음식점 (커피숍)(1층에는 불허하며 각 용도별 바닥면적은 300㎡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함)
		불허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◦70%이하
		용적률	◦350% 이하(단,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부 제4장 제7절에 의한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, 제로에너지 건축물, 지능형 건축물 인증 도입시 추가 용적률(최대 7%p) 적용가능)
		높이	◦55m(11층) 이하
		색채	◦『시행지침 제Ⅲ편 제4장 색채』 참조
		건축선	◦건축한계선 2m

3) 지원시설용지(변경)

<기정>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계 획 내 용
1	S1	S1-1	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3,4호에 의한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단란주점 및 안마 시설소, 안마원, 종교집회장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, 고시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9호에 의한 의료시설 중 병원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, 직업훈련소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(단, 노인복지시설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에 의한 운동시설(단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의한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
		S1-2	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3,4호에 의한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단란주점 및 안마 시설소, 안마원, 종교집회장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, 고시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, 집회장(예식장, 회의장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9호에 의한 의료시설 중 병원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, 직업훈련소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(단, 노인복지시설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에 의한 운동시설(단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의한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
		S1-3~4	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3,4호에 의한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단란주점 및 안마 시설소, 안마원, 종교집회장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, 고시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의한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및 그 이외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 종업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에 한함)
		S1-5	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3,4호에 의한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단란주점 및 안마 시설소, 안마원, 종교집회장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, 고시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, 직업훈련소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에 의한 운동시설(단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의한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9호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부대시설 (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'주유취급소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기준'에 따름)
		불허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◦70%이하
		용적률	◦300%이하(단,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부 제4장 제7절 7-1-3B에 의한 친환경·에너지절감형 건축물 도입시 추가용적률 적용가능)
		높이	◦66m (20층)이하
		색채	◦『시행지침 제Ⅲ편 제4장 색채』 참조
		건축선	◦건축한계선 4m

※ S1-1은 S1-2와 공동개발시에는 S1-1~2의 허용용도를 적용할 수 있음

<변경>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계 획 내 용
1	S1	S1-1	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3,4호에 의한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단란주점 및 안마 시설소, 안마원, 종교집회장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, 고시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9호에 의한 의료시설 중 병원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, 직업훈련소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(단, 노인복지시설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에 의한 운동시설(단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의한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
		S1-2	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3,4호에 의한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단란주점 및 안마 시설소, 안마원, 종교집회장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, 고시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, 집회장(예식장, 회의장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9호에 의한 의료시설 중 병원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, 직업훈련소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(단, 노인복지시설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에 의한 운동시설(단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의한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
		S1-3~4	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3,4호에 의한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단란주점 및 안마 시설소, 안마원, 종교집회장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, 고시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의한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및 그 이외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 종업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에 한함)
		S1-5	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3,4호에 의한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단란주점 및 안마 시설소, 안마원, 종교집회장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, 고시원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, 직업훈련소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에 의한 운동시설(단, 옥외 철타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의한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9호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부대시설 (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'주유취급소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기준'에 따름)
		불허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◦70%이하
		용적률	◦300%이하(단,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부 제4장 제7절에 의한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, 제로에너지 건축물, 지능형 건축물 인증 도입시 추가 용적률(최대 7%p) 적용가능)
		높이	◦66m (20층)이하
		색채	◦『시행지침 제Ⅲ편 제4장 색채』 참조
		건축선	◦건축한계선 4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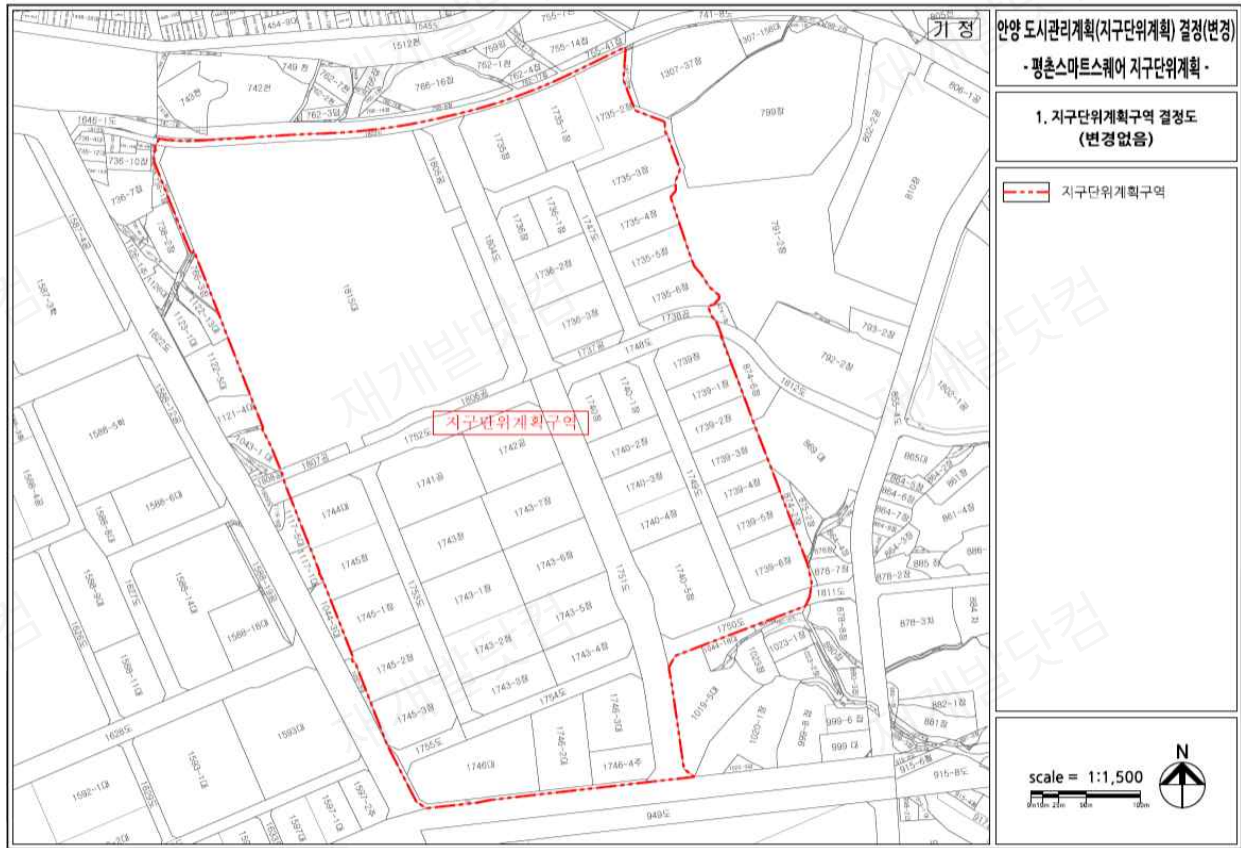
※ S1-1은 S1-2와 공동개발시에는 S1-1~2의 허용용도를 적용할 수 있음

4) 공공시설용지(변경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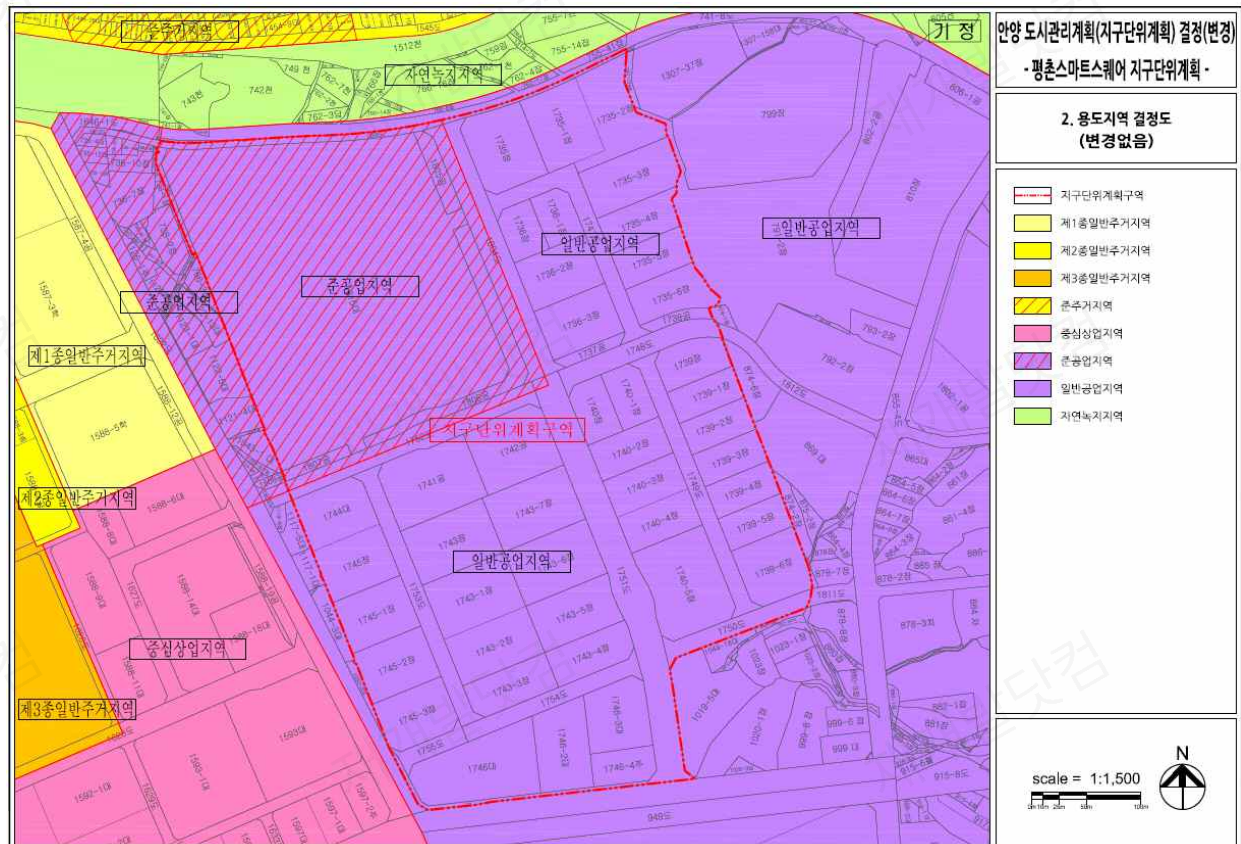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계 획 내 용
1	P1	허용용도	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금융업소(단,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(단, 노인복지시설 제외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에 의한 운동시설(체력단련장, 주민운동시설 등) ◦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의한 일반업무시설(단, 기업 지원시설에 한함), 공공 업무시설 ◦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◦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◦「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」 제2조 제3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
		불허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◦70%이하
		용적률	◦300%이하
		높 이	◦40m (10층)이하
		색 채	◦『시행지침 제Ⅲ편 제4장 색채』 참조
		건축선	◦건축한계선 2m

[붙임] 관련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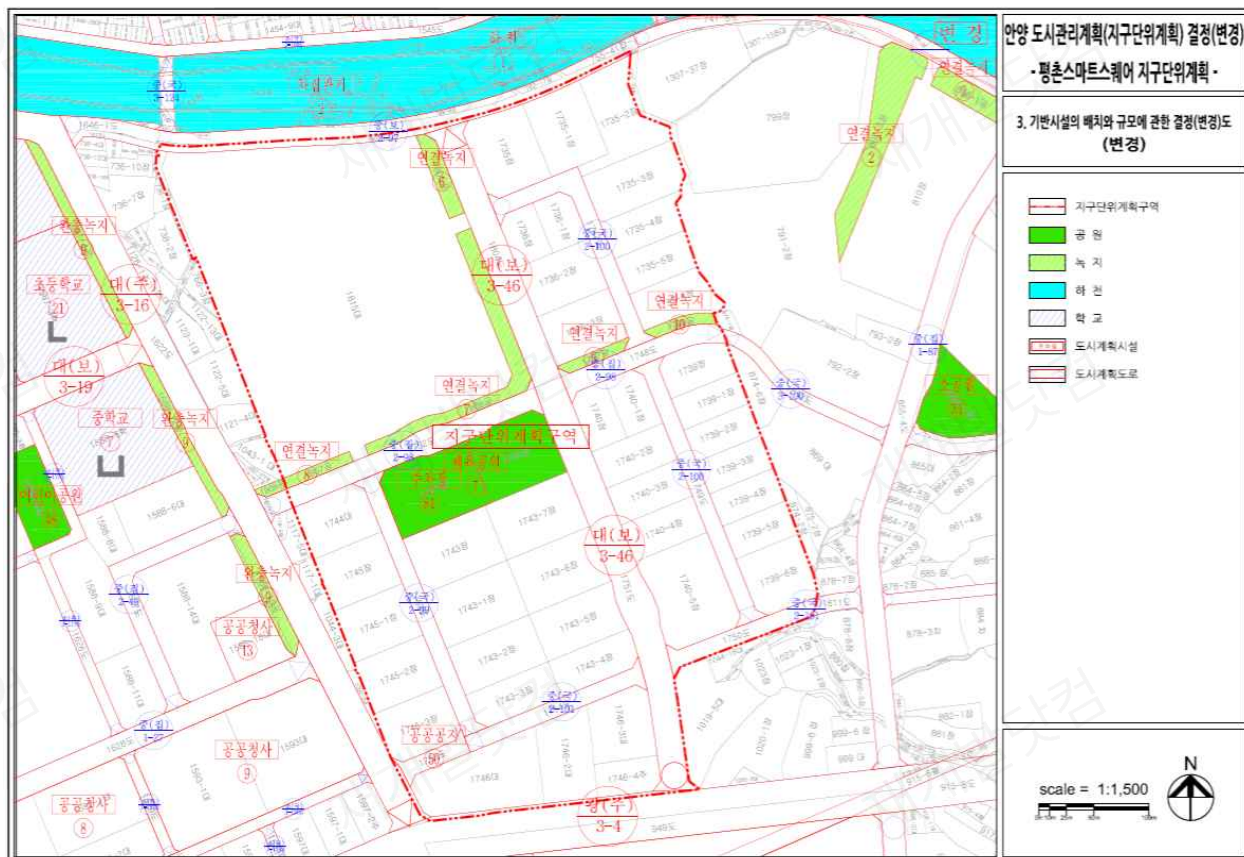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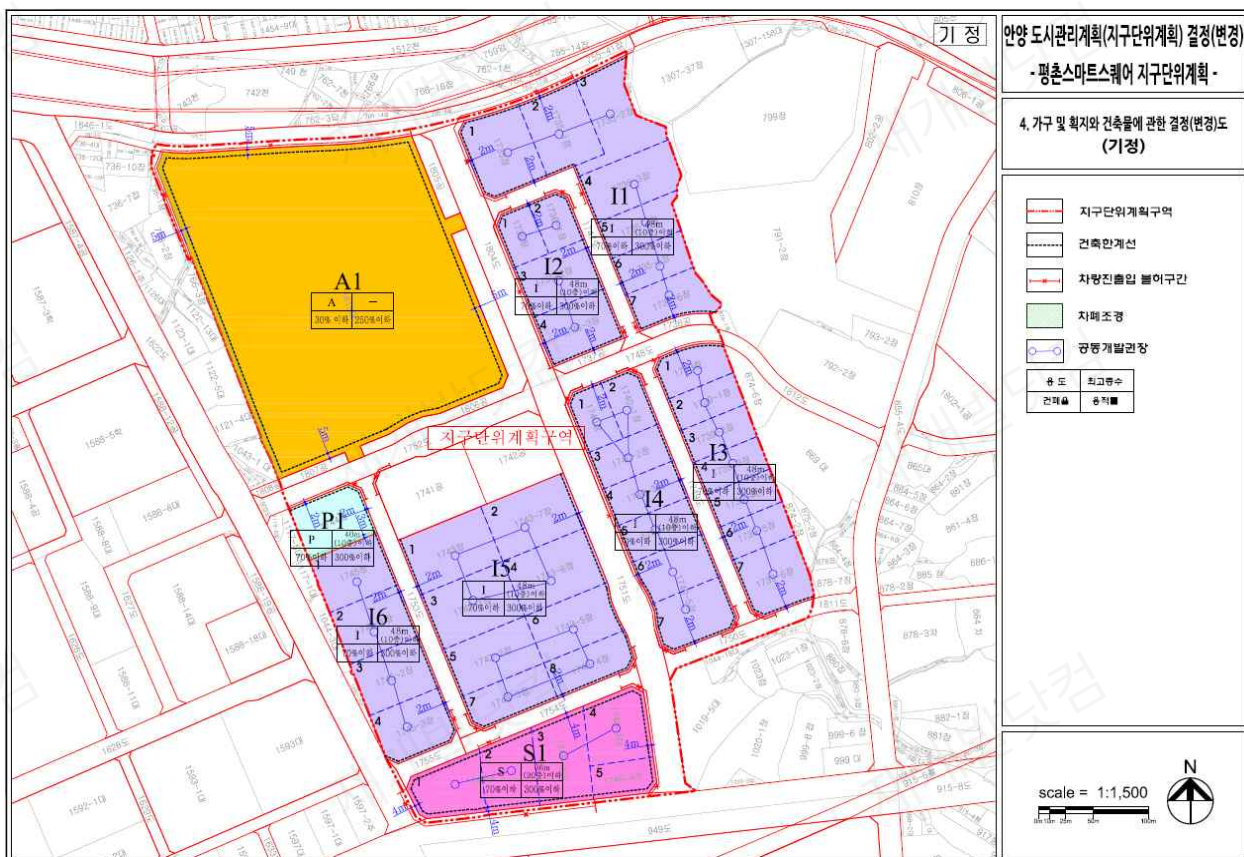
나. 용도지역 결정도 (변경없음)



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(변경없음)



라. 가구 및 획지와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(변경) (기정)



(변경)

